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8년 8월 28일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31일

3. 제안이유

국내 건설산업 축소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 정의에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업 및 건설자재 제조업 포함 (안 제2조)

나.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하도급 적정여부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설 (안 제5조)

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신설 (안 제6조의2)

라.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률 상향 조정 : 50% → 70% (안 제8조제2항제2호)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국내 건설산업 축소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2조는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타 법령에 따른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업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하여 조례 시행으로 인해 지역 건설산업체 전반에 적용되도록 정하였음.
- 안 제5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 안 제6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³⁾ 따라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음.

3)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 마. <생략>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생략>

- 안 제8조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율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8. 7. 31.~'18. 8. 2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국내 건설산업 축소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 50퍼센트에 따른 현황과 70퍼센트로 상향조정시 지역건설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예측자료)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